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59호로 2023년 5월 26일 전승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8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으로서 출자·출연 법인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함. 이는 현행 조례에서 근거규정으로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개정(시행. 2014.9.25.)으로 삭제되고, 동시에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2014.9.25.)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신설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임.
- **안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제4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별표>에 위반 행위별로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체화함.
-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한자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 ~ 안 제9조)
- 한편, 위반 행위별 타 구의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아래와 같음. (나머지 8개 구의회는 부과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연번	구의회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선서·증언 거부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1	서대문구의회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	송파구의회	200만원~300만원	100만원~200만원	400만원~500만원
3	노원구의회	100만원~300만원	50만원~100만원	300만원~500만원
4	강서구의회	50만원~300만원	50만원~200만원	100만원~500만원
5	강남구의회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6	동작구의회	100만원~300만원	50만원~100만원	300만원~500만원
7	성동구의회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300만원~500만원
8	금천구의회	300만원(증언거부)	500만원	500만원
9	강북구의회	100만원~200만원	50만원~100만원	200만원~300만원
10	은평구의회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1	관악구의회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300만원~500만원
12	서초구의회	200만원~300만원	100만원~200만원	400만원~500만원
13	중구의회	50만원~100만원	50만원~1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200만원
				불응 2회: 200만원~300만원
				불응 3회: 300만원~500만원
14	강동구의회	50만원~100만원 (선서거부)	100만원~2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200만원
				불응 2회: 200만원~300만원
				불응 3회: 300만원~500만원
15	마포구의회	선서거부: 100만원~200만원	300만원~5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200만원

		증언거부: 50만원~100만원		불응 2회: 200만원~300만원
				불응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
16	도봉구의회	~100만원	~100만원	불응 1회: 100만원~150만원
				불응 2회: 150만원~300만원
				불응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

###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서류의 미제출, 증인의 불출석 및 선서·증언 등의 거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과태료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는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하한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

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